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 계 · 시 정 요 구

제 목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남도 보령시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보령시 ○○사업소장 지방○○○○○ ○○○
(전 ○○과)

② 충청남도 보령시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 1.부터 2017. 1. 1.까지 보령시 ○○사업소장(전 ○○과)은 ○○○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공사추진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고, 지방○○○○○○○○ ○○○는 2017. 1. 16.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보령시 ○○○○과에서 동 사업 운영·관리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였다.

충청남도 보령시에서는 2011. 4. 28. 농림수산식품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시행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등의 계획으로 기본·실시 설계(주민공람)등을 완료하고, 충청남도 기본계획 협의를 거쳐 2014. 11. 20.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총 사업비 6,150백만원으로 보령시 ○○면 ○○리·○○리 일원에 테마공원 조성사업¹⁾을 시행하여 2016. 8. 8. 사업을 준공 하였다.

1) 사업개요 : ○○테마공원 등 6개지구 A= 22,047m², 사업기간 : 2014.12.23.~2016.8.8., 총사업비 6,150백만원(국비 2,700, 도비 540, 시비2,910)

이 과정에서 도농교류 목적의 관광객을 위한 공원 등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한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계획으로 2014. 12. 11. 민간인 10여명이 참여하는 ○○○ 농어촌테마공원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테마파크의 설립(2016. 6. 24.)의 기초가 되었으며, 2015. 7. 15.부터는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설물 조성 이후 운영방안 등에 대한 역량강화사업(교육, 선진지 견학 등)과 함께 2015. 12. 31.일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본래 취지인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될 소득기반과 체험 등의 기능이 전무한 일반공원, 주차시설 위주의 사업마무리로 인하여 (주)○○○테마파크 등으로 부터 사업내용 불만과 함께 소득기반시설 설치 등 기능보강 요구가 있었음에도 주차장 등 시설운영과 관련 주변 상인회 등과의 갈등을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관리위탁 결정 등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원시설 등을 방치하고 있는 등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 부당

위 관서 ○○과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35조 및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시행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기반시설, 휴양·체험 등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협의회(법인) 등으로부터 소득기반시설 설치요구가 있었을 경우 사업종료 이전 이를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될

수 있도록 2014. 11. 20. 수립한 사업 기본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어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다.

그리고 최초 계획 부실로 인하여 수정계획 등 보완 사유가 있었을 경우 적극 검토하여 지역주민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행위를 적극 수행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다.

2. 국·도비 예산 반납 등 지방재정 운용 부적정

동 사업의 최초 관리운영위원회 구성 이후 이를 근거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인 (주)○○○테마파크로부터 2016. 8. 31. 접수된 사업지구 내 예산집행 잔액을 활용한 소득창출 목적 등의 추가사업²⁾ 건의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2016. 10. 31. 기본계획에 없는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사항은 기본계획의 부실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사항이었으며, 오히려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시설관리운영 계획 및 구체적 투자계획서(법인 추가 투자)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사유로 주변 굴단지 상인들과의 마찰 우려를 들고 있으나 그로 인한 장기적인 운영관리 주체 확정이 지연되어 굴단지 상인회 등과의 갈등만 증폭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위 관서에서는 2016. 10. 20. 보령시장의 결재를 득한 기본계획상의 시설은 대부분 공공시설로 수익시설은 없는 상황임에도 2015년도 관련 사업이 종료되어서 잔여예산 사용불가를 결정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약 671백만원을 같은 해 반납하였으나, 관련 예산의 필요성이 있어 익년도에 기능보강 목적으로 별도 자체예산으로 편성하여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운용을 부적정하게

2) 추가사업 요청 : 굴폐각분을 이용한 고기능성 칼슘액비 생산제조시설, 수경재배 연동 온실, 배추절임 체험시설 등

한 사실이 있다.

3. 일관성 없는 행정추진으로 인한 역량강화사업 등 예산낭비

위 관서에서는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준공 이후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한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목적의 역량강화사업을(약 100백만원) 2015. 7. 15. ~ 2016. 7. 14. 기간으로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수행함에 있어, 주요 역량강화 내용은 법인설립, 홈페이지 구축, 선진지 견학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사업초기 관리운영위원회와 긴밀하게 추진해 왔던 사항은 이후 시설물 운영 등에 대한 필요사항을 관련 예산으로 시행한 것으로, 그간 추진되었던 역량강화 대상 주체인 (주)○○○테마파크를 배제하여 위탁 검토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스스로 깨뜨리고 역량강화사업이라는 명분의 예산을 낭비하게 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5. 10. 27.부터 2017. 10. 30.까지 일본지역에 시행된 국외연수 및 기타 교육내용은 테마공원 운영활성화 및 지속가능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실시된 사항으로 당시 ○○면장 등 11명이 연수에 참여하였고 대부분 운영위원회 소속 민간인들로 역량강화와 관련된 후속 사항으로 관련 사업에 따른 운영계획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업준공과 함께 당초 계획과 같이 관리위탁 등을 이행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지역 갈등만을 사유로 방치하게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효과가 없게 된 사항으로 해외연수비용 등 약 11백만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태만

위 관서 ○○○○과에서는 2017. 1. 16. ○○○과로부터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에 대한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이관 받아 추진하면서 당초 국·도비 반납 예산보존 차원으로 편성한 ‘2017년 ○○○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2차)’ 예산 600백만원을 집행함에 있어, 250백만원은 체험 등 기반시설로 사용토록 계획하였으며, 나머지 350백만원에 대해서는 2017. 6월부터 여러 차례 (주)○○○테마파크로부터 신선채소 수경재배사 설치 등 소득기반시설로의 사업계획이 접수 되었으나 법인 투자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며 시설비의 집행을 위해서는 별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예산집행 규정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용불가를 결정하였다.

위 관서에서는 민간위탁 계약이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서의 시설물 위탁 또한 수용이 불가함을 결정하고, 2017. 6. 16.(○○○○○○○○ 단장 전결), 2017. 8. 22.(○○○○과장 전결) (주)○○○테마파크에 통보함에 있어 그 내용은 업무이관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일관성 있고 투명한 행정추진을 위해서는 위탁근거 마련에 대한 검토부터 상호 협의에 따라 선행했어야 하나, 오히려 지역갈등 및 업무효율성의 사유만으로 시설물 관리를 ○○면에 업무이관코자 2017. 9. 7. 「보령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하였고, 그 결과 2017. 10. 13. 개최된 보령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에서도 수익창출 기반마련 미흡 등 사유로 부결되어 현재 시설물 관리의 주체가 모호한 상황에서 별도 정상화 방안 마련 없이 단순 환경정비 등 형식적인 시설관리 만으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지 조사결과 관리사무소는 별도 사용실적이 없이 장기 방치하고 공원시설물은 임의적 용도의 사용 및 선박등이 주차장 무단 점·사용 되고 있게 하는 등 시설물 운영·관리를 태만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보령시장은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구 농어촌테마파크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자 지정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조치하시고, 아울러 소관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장기간 폐쇄·방치되어 있는 관리실에 대하여는 시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이용방안 등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